

## 전문직 윤리강령과 자율규제의 문제

남서울대학교 교양학부, 윤리학 Ph.D.

### 문 시 영

전문직(profession)은 그 개념에 이미 수준 높은 윤리와 자율적 책임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율규제, 혹은 징계의 논의근거는 여기에서 유래한다. 'noblesse oblige'인 셈이다. 물론 전문직 윤리를 가정윤리와 시민윤리의 중간적 성격으로 규정한 뒤르켐(E. Durkheim)의 이론을 위시하여 전문직윤리의 특징과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특히 전문직 윤리에 있어서 자율규제 또는 징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전문직 윤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그 올바른 방향성 확립을 위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전문직 윤리에 대한 논의의 토대는 직업윤리에 관한 이론들이다. 직업윤리성립에 학문적 획을 그은 베버(M. Weber)의 설명에 의하면, 루터와 칼뱅이 제안한 소명(vocation)의 재조명, 즉 성직에 대한 소명과 삶에 있어서의 직업에의 소명이라는 이중적 소명의 구분은 직업윤리의 분수령이다. 이들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청지기정신(stewardship)으로 수행되는 소명이었으며, 그 정신은 기독교 직업윤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소명 및 청지기정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전문직 윤리의 특징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전문직의 기원 및 개념과 특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전문직(profession)은 전문화된 교육을 통하여 일정한 자격 또는 면허(license)를 획득함으로써 독점적으로 전문지식과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직업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중세의 길드(guild)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sup>1)</sup> 장인조합인 길드는 도제(apprenticeship)의 훈련기준 및 직무수행을 자율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전문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영역이 세분화되어 의료직을 비롯하여 엔지니어, 금융 및 회계 등으로 그 분야가 확산되어 왔다. 더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또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직업의 의의 및 그 종류와 기준 등은 과거의 것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직업과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는 전문직에 대한 개념정의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전문지식의 사용을 위한 고도의 지적훈련에 따른 자격요건, (2) 공공에 대한 봉사 및 사회적 유용성 증대의 책임, (3) 업무수행상의 자율 및 그에 따른 책임 등이다.<sup>2)</sup>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전문직이 지니는 권위의 독점적 성격에서 유래하는 자율성과 책임의 문제이다. 일찍이 파슨스(T. Parsons)가 전문직의 권위를 이른바 '기능성'(functional speciality)라고 부른 것은 전문직의 영역이 교육받은 특정분야로 한정 지워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관심은 그 이면의 메시지이다. 즉 전문직의 독점성에서 유래하는 자율성 책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전문직의 윤리강령(code of professional ethics)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윤리강령은 전문직의 의무와 책임을 정리하여 일련의 규칙의 형태로 만든 규정으로<sup>3)</sup>, 자율성과 책임 및 자율규제 등

1) Kizza J.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Information Age (NY: Springer, 1998)p.33

2) Ibid.

을 담보하는 선언이며, 전문직 윤리의 특징과 과제를 반영한다.<sup>4)</sup> 전문직이 비전문직에 비해 고유하고도 고차원에 해당하는 도덕기준을 반영한다는 것은 이러한 자율과 책임의 요소에 있다.<sup>5)</sup> 물론, 윤리강령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다. 홍보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영감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말하자면, 회의주의자들(sceptics)과 이상주의자들(idealist)의 관점이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sup>6)</sup> 회의주의에는 윤리강령이 엄격해서 수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부류, 현실주의자(realist)의 관점에서 냉소적 회의를 표명하는 부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반면에 이상주의자들은 윤리강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력히 옹호할 것이다.

전문직 형성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전문직 단체가 윤리강령을 선언하는 것은 전문직의 전문직됨을 입증하는 하나의 통과리례와 같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약협회(AMA)가 1847년 설립된 첫해에 광범위한 사항들을 반영하는 윤리강령을 채택한 것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전문직 협회들은 그 설립 및 운영과정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은 전문직 직위(professional status)의 획득을 원하는 직업군(occupational groups)이 윤리강령의 채택에 의미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sup>7)</sup> 전문화된 직업집단이 집단

의 이익을 초월하여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회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규율하는 권한을 사회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외부세계에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개의 경우,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윤리강령은 네 가지 차원을 지니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1) 전문직 단체가 정한 전문직윤리강령, (2) 전문가 개인의 삶에서 형성되어 온 개인의 행동강령, (3) 전문직이 고용된 직장 및 기관이 부과하는 직장강령, (4) 지역과 문화에 따라 오랜 동안 형성된 종교적 도덕적 신념 등에서 유래하는 지역사회강령 등이 그것이다. 이 각각은 상충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직한 것은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sup>8)</sup>

전문직 윤리는 자율적 조직(변형, 의협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전문직의 특성과 그 역할기대에 대한 사회의 인정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공신력(公信力)이라는 표현도 전문직의 이러한 자율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라 할 수 있다. 전문직은 이를 위한 윤리강령의 채택과 그 자발적 준수를 요구받고 있다. 윤리강령들은 단순히 나열된 규칙의 목록들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들은 일정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의도를 지닌 목록들이다. 말하자면, 윤리강령은 이를 채택하거나 적용하는 개인이나 기관 및 단체에서 행위의 지침이 되는 것이며, 전문직의 윤리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 하겠다. 다시말해 윤리강령은 일종의 윤리적 목적을 유지하는 동시에 내부결속의 강화를 위한 것이므로 그 위반의 경우, 엄격한 제재의 필요성을 수반된다. 가령, 전문직 윤리강령 중에는 구성원의 정체성(member-identification)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으며<sup>9)</sup>, 그에 따른 명예규정 및 징계규정

3) Fotion. N, 김일순 공저 『의료윤리』 (현암사, 1993) pp.60-61

4) 윤리강령의 성격 및 지위에 대한 논의에 헤어(R. M. Hare)의 관점이 참고할만한 자료가 될 수 있겠다. 그에 따르면 윤리적 사유에는 비판적 차원(critical level)과 직관적 차원(intuitive level)이 구분된다. 직관적 차원에는 어린이 훈육과 같이 아직 비판능력을 갖추지 못한 단계에 적용되는 경우, 또는 비판적 사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 및 비상시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지침들이 해당된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직관적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미 만들어진 규칙들의 모형(paradigm example of ready-made rules)이라 할 수 있겠다.\*이 부분은 Fotion, N, Elfstrom, G, *Military Ethic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6)p.67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5) May, L. *The Socially Responsible Self*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6)p.5

6) Fotion N, Elfstrom G, *Military Ethic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pp.66-67.

7) Luegenbiehl HC. 「윤리강령과 도덕교육」 ed, Johnson D. E.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이태식 외 공역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1999)p.277

8) Kizza, J.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Information Age* (NY: Springer, 1998) p.35

9)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 (NY: Oxford Univ. Press, 1994) p.7

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윤리강령의 위반은 법률 및 행정절차와는 별개로 전문직 구성원들의 검증을 거치게 되고 필요시 징계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있다. 윤리강령이라는 이름으로 징계규정, 형벌규정, 명예규정을 둘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문직 단체가 채택한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것은 법적 책임을 운운할 수 있는 것 이전에 도덕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징계의 문제는 매우 신중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우선, 전문직의 자율규제 또는 징계를 책임의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의뢰인과의 관계에서, 전문직이 제공하는 직무서비스 및 그 결과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부과된다. 전문직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하트(H. L. A. Hart)의 제안은 주목할만하다.<sup>10)</sup> (1) 역할책임(role responsibility), (2) 인과적 책임(causal responsibility), (3) 배상책임(liability responsibility), (4) 능력책임(capacity responsibility)이 그것이다. 이것을 응용하면, 전문직은 (1)그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2) 어떤 결과에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3)경제적 손해와 같은 손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4) 행위의 결과를 알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결과를 예방할 수 있는 행위능력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 사전예방의 책임과 함께 손해배상의 분담을 말하는 전문직의 집단책임(collective responsibility)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sup>11)</sup>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려는 책임의 문제는 이러한 범주 이외에 이른바 도덕적 책임(moral responsibility)이다. 이것은 전문직의 법률적, 제도적 책임의 문제를 넘어서 전문직의 양심과 그 목적성 및 의도에 관련된 책임의식이다. 가령, 전문가 단체가 사회의 복지 보다 자신들의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으

로 사회가 인식하게 되면, 보통의 상인 및 사업자 수준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윤리적 질문을 낳게 될 것이다. 또는 전문직 협회의 구성원이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전문직의 자율성을 따라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율규제 즉 징계는 의사윤리강령을 비롯한 지침들을 통하여 전문직의 윤리적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윤리적 정화 및 결속의 유지를 명분으로 징계 또는 자율규제가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징계하는 자의 의도가 다분히 가미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절차와 목적에 대한 윤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징계의 문제를 윤리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일은 도덕의 본질과 근거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일지 모른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제3권에서, 행위에는 칭찬 혹은 비난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자유로운 선택에 관한 논의는 희랍인들에게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고 중세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그 의의를 얻게 되지만,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책임귀속논의의 단초를 볼 수 있다. 그의 요점은 면책조건(excusing condition)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강제로 하게 되거나 혹은 무지로 인하여 하게 되는 행위들은 비자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위의 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연원으로부터 윤리학적 사유의 한 모퉁이에서는 자유의지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현대윤리학에서 책임의 문제는 윤리학 및 과학철학, 심리철학 등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칭찬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를 묻는 윤리학적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두 가지 관점이 두드러진다. 비난과 처벌이 과거지향적인 것인지 혹은 미래지향적인 것인지를 묻는 방식을 말한다.<sup>12)</sup> 공리주의자들은 교정과 예방에

10) Hart HLA, *Punishment and Responsibility* (NY: Oxford Univ. Press, 1968) p.212

11) Alpern KD, 「엔지니어의 도덕적 책임」 ed, Johnson D. E,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이태식 외 공역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1999) p.200

12) 이 개념 자체로 가치평가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

무계를 둔다. 예를 들어 밀(J. S. Mill)은 책임의 개념을 처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공리주의자들은 이러한 비난과 처벌의 정당화 근거로 교화 혹은 교정, 그리고 잠재적 악행자에 대한 억제책, 전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안전보호를 말한다. 이것이 미래지향적 관점이다.

응분의 대가라는 생각을 제안하는 관점은 과거지향적인 것으로 분류된다. 이른바 응보주의적 이론(retributive theory) 또는 응분론에 따르면, 처벌이 정당화되는 것은 행위자가 처벌을 받을만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적 형평성을 내세우며 악행의 심각성과 처벌의 엄중성을 일치시키려 한다. 칸트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칸트적 사고방식으로 하자면, 처벌이 정당화되는 것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두 원칙이 있다. 첫째, 악행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되어야 하며, 둘째, 악행의 심각성에 비례해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규정함에 있어서 인간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리주의 및 응보이론적 관점이 지니는 난점들의 절충은 보상이론(restitution theory)에서 시도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모든 전문직은 윤리강령을 지닌다. 성직으로 인식되는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특히 의료윤리에 있어서 윤리강령의 중요성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비롯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전문직 협회는 회원들의 행동에 관한 규정을 채택 할 수 있고,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징계 절차 및 처벌규정을 둘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또 하나의

권위주의적 상징이 되거나 다수의 횡포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도덕한 행위이다. 분명,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은 고통이나 불편함을 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처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합법적인 권위를 따라 그 절차를 통하여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복과는 구별되어야 한다.<sup>15)</sup> 처벌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윤리학적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떤 권위에 의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처벌받을 사람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아닌가? 처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의해 정당화될 뿐이다.

징계가 능사는 아니다. 징계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리강령이 윤리를 강요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윤리강령이 징계를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것은 윤리강령을 비윤리적인 것이 되게 하는 부끄러운 일이다. 윤리강령은 자율적 도덕 주체(autonomous moral agent)로서의 이성적 존재인 인간의 자기지향(self-directed)인 것이지 타율(heteronomous) 또는 타인지향적(other-directed)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6)</sup> 더구나 누군가 윤리강령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다면, 그것보다 더 비윤리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행동강령이 사회적 요소 및 그 강령을 준수해야 할 개인의 연대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현실적이며 불공정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sup>17)</sup>

징계가 이끌어 가는 사회는 단힌 사회요 단힌 도덕의 공동체가 되고 말 것이다. 베르그송(H. Bergson)이 말한 것처럼, 두려움에 의한 도덕 즉 단힌 도덕으로 전락할 것이다. 바람직한 것은, 윤리강령이 도덕교육의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열린 토론과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 자율적 참여에 의하여 전문직의 독

부분은 J. Hospers, 최용철 역 『도덕행위론』 (지성의 샘, 1994)에 비교적 평이하게 설명된 부분을 참고할 것을 추천함.

13) Trull JE, Carter JE, *Ministerial Ethics* (Broadman & Holman, 1993) pp. 182-256

14) Ladd J, 「윤리강령의 탐구」 ed, Johnson DE,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이태식 외 공역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1999) p.269

15) Hospers J, 최용철 역 『도덕행위론』 (지성의 샘, 1994) p.488

16) Ladd J, 「윤리강령의 탐구」 ed, Johnson DE,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이태식 외 공역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1999) pp.266-267

17) May, L, *The Socially Responsible Self*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6) p.2

점적 권위에 따른 자율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채택되고 준수되는 것이다. 전문직은 비전문직과 구분될 수 있으나, 윤리적 사유에서는 우월한 전문직의 지위가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도덕교사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윤리강령은 전문직 협회 회원들 모두에게 고지된 승낙(informed consent)의 토대에서 채택되어야 하고, 그 토대에서 자율규제 및 징계는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May L. The Socially Responsible Self.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96.

2. Johnson DE.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이태식의 공역 『엔지니어 윤리학』 동명사, 1999.
3. Hospers J, 최용철 역 『도덕행위론』 지성의 샘, 1994.
4. Trull JE, Carter JE. Ministerial Ethics. Broadman & Holman, 1993.
5. Beauchamp TL, Childress JF. Principle of Biomedical Ethics. NY: Oxford Univ. Press, 1994.
6. Kizza J. Ethical and Social Issues in the Information Age. NY: Springer, 1998.
7. Fotion N, Elfstrom G. Military Ethics.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6.
8. Fotion N, 김일순 공역 『의료윤리』 현암사, 1993.